

보도일시 (인터넷) 2023. 4. 17.(월) 06:00,
(지면) 2023. 4. 17.(월) 석간

배포 2023. 4. 14.(금) 오후

어구보증금제도 세부 이행방안 마련 등 「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옛날 지명 조업구역 경위도 좌표로 표기, 뱀장어안강망어업과 정치성구획 어업의 규제개선 등도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각각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추진한다.

* 「수산업법 시행령」은 2023년 4월 17일(월) ~ 5월 29일(월), 42일간

* 「수산업법 시행규칙」은 2023년 4월 10일(월) ~ 5월 26일(금), 46일간

해양수산부는 어구·부표의 전주기적 관리 및 자율 회수를 통해 해양쓰레기를 줄이고자 지난해 「수산업법」을 전부개정(2022. 1. 11. 공포)하여 ‘어구보증금제*’를 도입하였으며, 2020년부터 3년간 세부 운영방안 연구를 통해 보증금 대상사업자, 어업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번에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였다.

* 어구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여 판매하고 반납할 때 그 금액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해양 환경오염, 수산자원, 어선 안전사고 사전 예방 효과 기대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어구보증금제의 적용 대상, 표식 제작, 보증금액, 취급수수료,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규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 설명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어업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어구보증금액 등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업구역이나 조업금지구역의 표기가 옛날 지명으로 되어 있어 식별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업(금지)구역의 표기방식을 경위도 좌표로 개선하였다. 또한, 조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뱀장어안강망

어업에서 무동력선박 형태의 바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성구획어업에서 사용하는 관리선의 규모를 시·군·구청장이 일정 범위(25톤 미만)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여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 활동이 가능해지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미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할 때 미국이 요구하는 해양포유류 혼획 기준에 적합한 어업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 고시, 맨손어업 등 신고어업에서 사용 가능한 도구의 세부 사항 고시, 신고어업의 조업 시기와 조업구역 등을 수면의 관리권자인 시·군·구청장이 구체적으로 고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새로 추가하였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새롭게 도입된 어구보증금제도의 구체적인 사항과 더불어 연근해어업 분야 선진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규제혁신사항을 반영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어업규제는 완화하면서 수산자원도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의견제출처>

-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전화: 044-200-5512, 팩스: 044-861-9431, 이메일: asdf4ghj@korea.kr)
- * 해양수산부 누리집 : 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 <http://opinion.lawmaking.go.kr> →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성원 (044-200-5510)
		담당자	사무관	권미연 (044-200-5511)



① 어구·부표 보증금제 세부 운영사항 마련

- 어구보증금제 도입 근거 마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보증금 부과대상의 범위, 보증금관리센터 설치·운영, 지원 등 세부 운영사항 마련 추진
 - (시행령)어구보증금 부과대상 범위, 보증금환급의 예외, 어구보증금 관리센터의 설치·운영, 재정적·기술적 지원대상, 업무의 위탁 등
 - (시행규칙)보증금액, 보증금환급의 예외 적용 신청, 취급수수료 산정, 미반환 보증금의 산출, 보증금관리센터의 사업, 재정적·기술적 지원 신청방법 등

② 실뱀장어안강망어업 규제개선(선박형태 바지 허용)

- 실뱀장어를 주로 포획하는 곶소만, 금강하구둑 등은 유속이 강한 해역으로 현행 사각 형태의 바지의 경우 전복사고 위험성 상존
 - * 업계는 안전을 이유로 무동력 선박 형태 바지를 부속어구로 허용해 줄 것을 지속 요구('16~)
- 조업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어업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무동력 선박 형태 바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필요
 - (시행령)선박 형태 바지의 규모는 어획강도에 영향이 없도록 평균전장 16미터 이하*로 하고, 추진축계 등이 없는 무동력선에 한하여 적용
 - * 표준어선형기준 [별표2]에 따라 4.99톤에 해당되는 표준전장 길이로 설정

③ 미국 수출허가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美 MMPA 대응)

- 미국은 자국의 해양포유류법(MMPA)를 개정하여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동등성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수입금지 예정
 - (시행령)우리 어업인 및 수출기업의 원활한 대미수출 지원을 위해 법령상 「(가칭)미국 수출허가증명서 발급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근거 마련

4] 조업(금지)구역 표기 방식을 경위도 좌표로 개선

- 일부 조업(금지)구역이 육지(지명) 기점으로 표기*되어 시대적·지리적 변화로 어업인 및 단속기관이 정확한 구역 경계 확인에 한계**
 - * 전남 고흥군 도양면 봉암리 쌍층사돌각, 장흥군 대덕면 노력도 남쪽 끝, 완도군 약산면 당목리 한박금 끝 90도 1천5백미터의 점, 완도군 약산면 당목리 한박금 끝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 ** 어업인 및 단속기관 간 조업(금지)구역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경우 수산관계 법령 위반 행위 단속에 대한 저항 등 발생 우려
- (시행령)어업인의 편의 및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단속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업(금지)구역 표기방식을 기존 육지(지명) 기점에서 경위도 좌표로 개선
 - * 어업인 간담회('22.11.) 및 업종별 의견조회('23.1.) 실시

5] 정치성구획어업의 관리선 톤수 규제 완화

- 정치성구획어업의 관리선 규모가 8톤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투·양망 시 안전문제, 조업공간 부족 등으로 관리선 증톤 지속 요구
 - * 강원, 경남권역 어업인 지속 건의(박형수 의원실 주관 간담회 / '21.9월, '22.4월 등)
- (시행규칙)조업 중 작업공간 확보 등 조업 효율화 및 어선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25톤 미만 범위 내에서 시·군·구 조례로 관리선의 규모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6]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과 민원처리 결과 반영 및 조문정비

- (시행령)(시행규칙)「양식산업발전법」분법에 따라, 「수산업법 시행령」에서 분법 전에 사용하던 “양식장형망선”을 “마을어장형망선”으로 개정
- (시행령)신고어업에 사용되는 도구를 해양수산부 고시로 정하고, 조업시기, 조업구역 등을 지자체 자율로 정하도록 명시
- (시행규칙)마을어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에 전통적으로 사용해오던 ‘끄랭이’(끄레, 거랭이) 등 손틀 어구류를 추가
- (시행령, 시행규칙)기존 4개의 해수부령*을 통합하여 신규 제정할 당시 미비했던 조문 또는 해석에 혼동이 우려되는 조문 등을 정비